

덕성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

성실한 세금납부와 국세 행정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,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변경내용

○ 일시적 강연료,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70%에서 '19.1.1.지급분부터 60%로 조정됨

○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

구 분	'18. 1月~3月	'18. 4月 ~ 12月	'19년 이후
지급액	25만원	16만 6,666원	12만 5,000원
필요경비 공제율	80%	70%	60%
기타소득금액	5만원		
소득세	0원		

* 적용대상 : 일시적 강연료·자문료,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·대여소득, 무형자산의 양도·대여소득 등

예시) 기타소득금액(50,000원) = 125,000(기타소득 지급액) - 75,000(필요경비 60%)

☞ 원천징수세액 : 0원 (과세최저한에 해당함)

○ 분리과세 적용 : 기타소득금액(지급액 - 필요경비)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

○ 필요경비율 적용 : '18.1.~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%, '18.4.~12월 지급분은 70%, '19.1월부터는 60%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

2018. 12.

도 봉 세 무 서 장 (관인생략)

안내문 관련 문의처는 국세조사관 송보화(☎02-944-0408)입니다.